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)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를 말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
3. 영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

제16조의3(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)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운영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급식소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표자
2. 급식소의 명칭
3. 설립주체
4. 급식소의 소재지
5.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

④ 센터의 장은 등록된 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의 운영자가 등록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등록종료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급식소 외의 급식소의 운영자는 급식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법 제2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21조의3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21조의

3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절차 및 관리

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21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서는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신 설>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 (대표자)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)		전화번호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	
신청사항	급식소 명칭		설립주체 [] 국공립 [] 사립	
	소재지		전화번호	
	급식소 유형 [] 유치원 [] 어린이집 [] 지역아동센터 [] 기타()			
	회원	명	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[] 예 [] 아니오	
	1일 급식인원 계()명 아침 ()명, 점심 ()명, 저녁 ()명, 간식 ()명, 기타 ()명			
	종사자 수 계()명 영양사 ()명, 조리원 ()명, 교사 ()명, 기타 ()명			
	운영형태	[] 직영 [] 위탁	영양사가 있는 경우 [] 공동관리 [] 공동관리 아님	
	위탁급식(위탁한 경우만 해당) 업소명칭 주소 연락처			
	연령별 인원수(현원기준) 계()명 만0세()명, 만1세()명, 만2세()명, 만3세()명, 만4세()명, 만5세()명, 만6세 이상()명			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귀하

제출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					
처 리 절 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등록증 발급
				처리기관 :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				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

(앞쪽)

제 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. 대 표 자(법인명): (법인등록번호:) 2. 급식소 명칭: 3. 소 재 지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제2항에 따라 ○○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○○○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직인
--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120g/㎡)

(뒤쪽)

특이 사항		
연 월 일	사 항	확인(서명 또는 인)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(대표자)	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)		
급식소 명칭		(등록번호)		
급식소 유형		[]유치원, []어린이집, []지역아동센터, []기타()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	
대표자				
급식소의 명칭				
설립주체	예시: 국공립, 사립			
소재지				
집단급식소 신고여부				
변경사유				
분실사유				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
급식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귀하

첨부서류	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부 ※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

(1쪽)

급식소 등록관리대장(○○○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)						
1. 등록사항						
급식소명						
등록번호	제 호		등록일	년 월 일		
대표자						
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급식소 유형	[]유치원 []어린이집 []지역아동센터 []기타()			현원	명	
1일 급식 인원 (명)	계	아침	점심	저녁	간식	기타
운영 형태	직영·위탁			영양사가 있는 경우 공동관리 여부 (○ · ×)		
종사자 수	계 명 (영양사 명, 조리사 명, 교사 명, 기타 명)					
위탁급식 (위탁한 경우만 해당함)	위탁일시	업소 명칭		대표자	연락처	

2. 등록변경사항

연월일	내 용	기재자 성명	연월일	내 용	기재자 성명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120g/㎡)

3. 위생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 현황

일시	내 용	일시	내 용

4. 대상별 교육 현황

일시	교 육 대 상 /교 육 내 용	일시	교 육 대 상 /교 육 내 용

5. 기타

일시	내 용	일시	내 용
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종료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번호)		
	주 소		
어린이 급식소	급식소 명칭		등록번호
	유형 []유치원 []어린이집 []지역아동센터 []기타()		
	소재지		
종료일	년 월 일		
종료사유			
등록증 분실사유			
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
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을 종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귀하

첨부서류	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 1부 ※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	수수료 없 음
처리 절차		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통보		
신고인		처리기관: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16조의2(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)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를 말한다.		
		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. 영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		
<u><신 설></u>		제16조의3(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)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운영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
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급식소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대표자
 2. 급식소의 명칭
 3. 설립주체
 4. 급식소의 소재지
 5.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
- ④ 센터의 장은 등록된 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의 운영자가 등록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

